

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공고
제2021-04호

사람투자
당신의 꿈에 투자합니다!

2021년 지역·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

“찾아가는 직업훈련”
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모집 공고

2021. 4.

 부산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

1 사업개요

□ 추진배경

- '코로나19'로 인한 고용 위기 해소 등을 위해 직업훈련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, 기존 규제 중심인 훈련심사체계에 대한 개편
- 현장성 높은 훈련이 공급되기 위하여 지역·산업 현안을 가장 잘 아는 주체가 직접 심사에 참여하고 자율적으로 공급

□ 사업개요

- (목적) 지역 내 “위기 산업”, “전략산업” 및 코로나19로 인하여 직접적 타격을 입은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, 여성·중장년 등 “취약계층” 대상훈련과정을 부산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주도 하에 **지산맞 훈련 수시과정**의 일부로 운영

○ 지원대상

- ①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대상업종에 속하는 산업
- ② 대량고용변동 신고가 접수된 산업
- ③ 특성상 경력단절자 등이 다수 발생하는 산업 등 직업훈련이 시급하게 필요한 분야
- ④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(RSC)에서 의결한 산업의 재직자, 채용예정자 등

- (훈련과정) 위기 사업장 대상 훈련 및 취약계층 대상 훈련을 중심으로, 기존 지역·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훈련과정과 중복되지 않는 과정

○ 심사 및 심의

- (훈련예산) 2021년 부산지역 내 수시 훈련과정 예산 한도(3억 원) 내 사용
- (과정심사) 2021년 수시 훈련과정 심사체계 준용



2 심사 기본방향

□ 대상산업

| 구분 | 주요현안 | 조사 실시 | 대상산업 선정 |
|------------------|---|---|---------|
| 스마트제조산업 분과위원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르노삼성 구조조정 실시에 따른 대량실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스마트제조산업 분과위원회에 참여하는 산업별 협단체 및 기업체 대상 고용유지조치 현황에 따른 필요 훈련 수요 등 파악 | 자동차산업 |
| 융합서비스산업 분과위원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‘부산지역 인력 및 훈련 수급조사’ 결과에 따른 훈련수요 파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융합서비스산업 분과위원회에 참여하는 산업별 협단체 및 기업체 대상 고용유지조치 현황에 따른 필요 훈련 수요 등 파악 | 여행·숙박업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020년 융합서비스산업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른 훈련수요 파악 | | 전시산업 |

□ 훈련과정

| 구분 | 훈련 목적 및 대상 | 훈련과정 |
|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자동차산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량실업으로 인한 전직 지원 협력업체 근로자의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유급휴가훈련 등 | 고용유지 훈련 (유급휴가훈련 등) |
| 여행·숙박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여행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수요 급감에 따른 퇴직자의 전직 지원 랜선여행으로의 사업영역 전환을 위한 콘텐츠 크리에이터 양성훈련 등 숙박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취약계층 대상 훈련수요 발굴 하계휴가 등으로 인한 일시적 수요 증가를 대비한 재직자 또는 채용예정자 훈련 등 | 이·전직 훈련, 취약계층 특화훈련 |
| 전시산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미팅 테크놀로지 기술을 접목한 온라인 전시 및 회의 기획·개최 지원 훈련 등 | 재직자 직무능력향상훈련 |

□ 프로그램 개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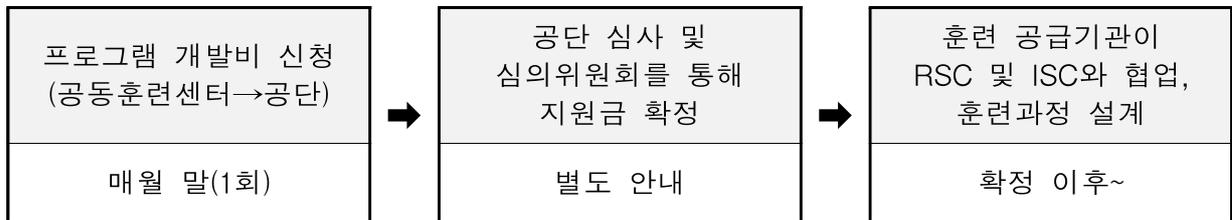
○ 지원내용: “찾아가는 직업훈련” 과정 설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에 한함

※ 부산지역은 훈련기관별 최대 1억 원

※ 인건비, 일반운영비, 시설·장비비 등 기타 인프라 구축 지원은 없음

○ 신청기간: 2021년 4월~6월(매월 1회)

○ 신청 및 승인절차



○ 훈련기관

- “찾아가는 직업훈련” 사업에 참여하는 공동훈련센터

- 파트너훈련기관 또는 신규 훈련기관(인증 미보유기관 포함)은 매칭된 공동훈련센터를 통해서만 신청 및 지원 가능

※ 매칭된 공동훈련센터는 파트너 훈련기관 또는 신규 훈련기관의 프로그램 개발비 집행관리 및 회계정산에 따른 책임이 있음

3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

□ 훈련기관

- (공동훈련센터) 2021년 지역·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동훈련센터(대한상공회의소 부산인력개발원 등 5개 소)
 - 기존 공동훈련센터에서 '찾아가는 직업훈련' 운영 시 수시 훈련실적으로 인정
- (파트너훈련기관) 공동훈련센터와 매칭하여 신청하고, 지원금 지원기준은 지역·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파트너훈련기관에 준하여 적용

[파트너훈련기관 신청가능기관]

- ◆ 『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』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
- ◆ 사업주 단체 및 그 연합체
- ◆ 『고등교육법』에 따른 대학, 전문대학
- ◆ 『평생교육법』에 의한 평생교육시설
- ◆ 『학원의 설립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』에 의한 평생직업교육학원
- ◆ 『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』에 의한 공공기관 중 훈련사업 실시 경험이 있는 기관
- ◆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

- 지원금 지원기준: 훈련비용(훈련비+숙식비+수당+임금 등)만 지원
- 한국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직업훈련기관인증평가 미보유기관도 참여 가능
- 교육부 주관 「대학기본역량진단」 결과 2021년도 정부재정지원 가능 대학에서 제외된 대학 및 한국직업능력심사평가원 인증평가 결과 '인증유예' 기관은 참여 불가
- 단, 준법성 및 재정건전성, 행정처분 이력 등 최소요건* 확인

* 훈련기관 선정 최소요건

| 구분 | 필수 확인 항목(5개) | 판단기준 및 참고사항 등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준법성 | [1] 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」에 따른 행정처분 이력 여부 | ▲ 최근 1년간 (훈련계획서 접수일 기준) 아래 ①~⑤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1건 이상 행정처분 이력이 확인될 시 사업 참여 불가 ①시정명령, ②계약해지, ③인정취소, ④위탁·인정제한(해당과정, 해당직종, 전과정), ⑤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 |
| | [2] 임금체불 이력 여부 | ▲ 최근 1년 내(훈련계획서 접수일 기준) '지정지시일' 또는 '검찰송치일'이 1건 이상 시 사업 참여 불가 |
| | [3] 최저임금 위반 이력 여부 | |

| 구분 | 필수 확인 항목(5개) | 판단기준 및 참고사항 등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재정 건전성 | [4] 세금체납 여부 | <p>▲ 최근 1년간(훈련계획서 접수일 기준) 국세, 지방세,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를 체납한 경우 사업 참여 불가</p> <p>※ 서류 미제출, 기관정보 불일치, 발급기관 미준수, 발급처 직인 없음(테스트페이지 포함), 서류가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 필수 요건 미충족으로 간주</p> |
| 훈련기관 적정성 | [5] 관계 법령에 따른 훈련시설 인정 여부 | <p>▲ 관계 법령에 따른 훈련시설의 범위</p> <p>① 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」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</p> <p>②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 직업능력개발단체</p> <p>③ 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한 학교</p> <p>④ 「평생교육법」에 의한 평생교육시설</p> <p>⑤ 「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학원</p> <p>⑥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설치한 시설</p> <p>⑦ 기타 개별법에 의한 훈련시설</p> <p>▲ 과정인정 신청전까지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‘훈련기관’으로 승인받아 HRD-Net에 입력(훈련기관 관리번호 발급)되어야 함</p> |

※ 기존 공동훈련센터·파트너훈련기관이 심평원 인증 보유기관인 경우 위 필수요건(5건) 검토 생략 가능

□ 훈련과정

○ NCS 훈련기준 적용의 예외 인정

○ “지역적 필요성”과 “특화성”을 최우선순위로 하여 자율적 설계 가능*

* 경영·회계·사무 등 민간 공급량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는 ‘지역적 필요성’과 ‘특화성’을 엄격하게 심사

| 대상 산업 | 훈련대상 | 훈련내용(안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자동차 산업 (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이직·전직 대상자 - 151 기계·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-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립원 - 817 운송장비 정비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기술 전환 - 내연차 제조 → 수소·전기차 제조 |
| 관광업 (55 숙박업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재직자 - 532 숙박시설 서비스원 - 561 청소·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- 026 경영지원 사무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2030205 접객서비스 ○ 외국어 - 호텔실무 외국어(영어, 일본어, 중국어 등) ○ 06 대인관계능력 등 ○ 12030202 객실관리 ○ 11020101 환경미화 ○ 02020201 인사 ○ 02020101 총무 |

| 대상 산업 | 훈련대상 | 훈련내용(안)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전시산업 | ○ 이직·전직 대상자 - 415 디자이너 | ○ 전시디자인 ○ 디지털 디자인 |
| | ○ 재직자 - 415 디자이너 | ○ (고용유지) 전시디자인, ○ (신기술) VR콘텐츠디자인 |

○ 훈련과정명 작성 시 유의사항

■ 훈련과정명은 반드시 아래 형식(예시)에 의거하여 신청(입력) 요망

| 구분 | 훈련과정명 양식 | 비고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일반 | (특화) 000 향상과정_일반 | ※ 훈련유형이 중복되는 경우, 훈련과정명에 해당 키워드를 모두 기재하여야 함 - 훈련과정명 형식 미 준수시 유형별 훈련실적에 누락될 수 있으므로 주의 (ex: (특화) 000 향상과정_중장년ICT_스마트공장) |
| 중장년ICT | (특화) 000 향상과정_중장년ICT | |
| 고용위기 | (특화) 000 향상과정_고용위기 | |
| 스마트공장 | (특화) 000 향상과정_스마트공장 | |
| 유급 | (특화) 000 향상과정_유급 | |

○ 유의사항

(기본방침) 고용 위기산업 또는 전략산업 종사자, 취약계층 대상 필요 훈련을 중심으로 하되
 ① 부산인자위 인력·훈련 수급조사 결과에 부합하고, ② 적정한 시설·장비·교강사 등을 갖추며, ③ 기존 지산맞 훈련 등과 중복되지 않은 훈련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

(훈련시간) 최소 2일 16시간(우선지원대상기업은 1일 8시간)
 - 1일 최대 훈련시간 및 일 평균 훈련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
 - 채용예정자 훈련과정은 720시간 내로 설정

(훈련방법) 집체훈련, 혼합훈련(집체+비대면) 등 자유롭게 구성

○ 신규 훈련기관이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, 매칭된 공동훈련센터가 「프로그램 개발비」 신청 가능

- 지역·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운영규칙에 따라 매칭된 공동훈련센터 연간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, 회계정산 결과에 따라 환수될 수 있음
- 「프로그램 개발」에 참여할 경우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컨설팅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지역·산업 HRD연구센터 및 컨소시엄허브사업단과 협업 가능

훈련비용(훈련비+숙식비+훈련수당+임금 등)

○ 훈련비 지원 기준(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2조)

- 훈련비는 정산하지 않으며, 동일한 내용으로 「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규정」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과 중복하여 지원 불가

- 훈련비용 등의 지원기준은 「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」 제17조를 따르며, 3개월 이상의 채용예정자훈련은 단위 기간별로 지급 가능
- 훈련 수준에 따른 훈련비 지원요율

| 구분 | NCS 수준 | 지원요율 |
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
| 지원·기능인력 | 1~4수준 | 100%~150% |
| 전문·기술인력 | 5수준 이상 | 100%~200% |

○ 지원요건 및 기준

| 항목 | 지원대상(요건) | 지원기준 |
|-----------|---|---|
| 훈련비 | ① 협약기업 재직근로자 또는 채용예정자 대상 훈련일 것 (파트너기관에 지불하는 훈련비 포함) | ○ 실비심사를 통해 확정된 금액 |
| 훈련수당 | ① 협약기업에 채용이 내정된 훈련생에게 월 평균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1개월 이상 실시할 것 ② 해당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일 것 다만, 해당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직접 훈련수당을 지급하기가 어렵거나 원활한 훈련실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동훈련 센터에서 훈련수당을 직접 지급할 수 있음 | ○ 사업주(또는 훈련기관)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월20만 원까지 지원 |
| 임금 | ① 협약기업 재직근로자 중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41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대상 훈련일 것 ② 해당 재직근로자의 사업주가 훈련기간 중 임금을 지급할 것 ①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(협약기업에만 해당)에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 훈련을 실시할 것 ② 해당 재직근로자의 사업주가 훈련기간 중 임금을 지급할 것 | ○ 「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」 제17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준으로 지원 |
| 식비 또는 숙식비 | ① 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훈련을 협약기업 재직자 또는 채용예정자에게 실시하고 훈련기관이 숙식을 제공하거나 해당 재직근로자의 사업주(협약기업에만 해당)가 숙식비를 지급한 경우 ② 훈련시간이 1일 평균 5시간 이상일 것 | ○ 식비는 1일 5,000원까지, 숙식비는 1일 14,000원(훈련기간이 1월 이상이고 주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휴일에도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월 330,000원)까지 지원 |

※ 유급휴가훈련의 임금 및 대체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기업에게 직접 환급

※ 임금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 가능

○ 세부항목별 지원기준

| 항목 | 지원대상(요건) | 지원기준 |
|-----------------|--|---|
| 훈련시설 및 장비 (임차비) | ① 훈련과정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훈련장비의 감가상각비, 자산취득이 불가한 렌탈비용 ② 훈련과정 운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훈련시설의 대관료 | ○ 실비로 인정하되 인프라지원금의 시설·장비 지원항목을 제외한 비용(그 밖의 훈련비용에 금액 기재) |

| 항목 | 지원대상(요건) | 지원기준 |
|---------------|---|---|
| 강사료 | ① 공동훈련센터에서 운영하는 지역·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인정과정에 한함 ② 훈련과정별 강사인정 기준에 적합한 자 | ○ 시간당 20만 원 한도로 지원하되 전담자는 내부강사로 지급 불가 ○ 해당사업 전담자 이외의 인력은 내부강사로 활용가능(단, 강사료는 외부강사료의 1/2초과금지) * 훈련기관이 20만 원 이상의 강사료가 필요함을 입증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시간당 20만 원 이상 지원 가능 |
| 강사여비 | ① 강사료 지급기준 ①, ②에 해당되는 자 중 훈련기관 지역 외에서 출강한 강사에게 지급되는 여비 | ○ 공동훈련센터 내부규정 준용 |
| 과정운영 보조인력비 | ①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훈련과정을 운영하는 보조인력 인건비 | ○ 시간당 단가는 최저임금액의 130% 한도 ○ 훈련과정 회차당 1명을 지원 가능하며, 훈련시간 및 훈련시간 전후의 준비·정리에 소요되는 각 8시간(총 16시간) 지원 가능 |
| 운영 지원비 | ① 훈련과정에 소모되는 사무용품 비용 ② 훈련과정 운영을 위하여 전담인력 및 훈련과정 보조인력의 출장비용 | ○ 출장여비 및 소모성 사무용품비는 공동훈련센터 내부규정 준용 |
| 다과비 | ①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훈련과정에 소요되는 다과비 | ○ 1인당 1일 3천원한도 |
| 제세 공과금 | ①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 예정자 훈련과정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전기, 상하수도료 등 제세공과금 | ○ 실비지원 |
| 실습 재료비 | ①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훈련과정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실습 재료 비용 | ○ 실비지원(다만, 프로젝트, 음향시설, 노트북 등 임대료는 불가) |
| 교재 구입비 | ①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훈련과정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교재 인쇄 및 구매 비용 | ○ 실비지원 |
| 재해 보험료 | ①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 훈련과정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훈련참여생 보호를 위한 보험 | ○ 실비지원 |
| 그 밖의 훈련비용 | ①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훈련과정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피복비 및 문구비 등 | ○ 문구비는 1인 1차 수당 3,000원 한도 (단, 120시간 이상의 채용예정자훈련은 1인 1월당 3,000원 한도) ○ 피복비 등은 실비지원 |
| 간접비 | ① 지역·산업 맞춤형 사업 운영 및 훈련과정 운영에 필요한 제반비용으로 재투자되는 비용 | ○ 간접비를 제외한 훈련비의 5% 범위 이내 (파트너훈련기관 지원비용 포함) |

- 강사료 지급 기준안

| 등급 구분 | A등급 | B등급 | C등급 | D등급 | E등급 |
|-------|---|--|--|---|---|
| 금액 | 20만원(시간당) 한도 | 15만원(시간당) 한도 | 10만원(시간당) 한도 | 7만원(시간당) 한도 | 5만원(시간당) 한도 |
| 자격 | 차관급이상 공무원 연구관(연구위원급)이상 부총장급(대학) 이상 박사 취득 후 경력15년 이상 석사 취득 후 경력20년 이상 학사 취득 후 경력25년 이상 경력 30년 이상 | 4급이상 공무원 책임연구원(연구위원)이상 정교수급 이상 박사 취득 후 경력9년 이상 석사 취득 후 경력12년 이상 학사 취득 후 경력15년 이상 경력 20년 이상 | 5급이상 공무원 선임연구원급(부연구원)이상 부교수급 이상 박사 취득 후 경력4년 이상 석사 취득 후 경력7년 이상 학사 취득 후 경력10년 이상 경력 15년 이상 | 6급이하 공무원 선임연구원급(원급) 미만 조교수급 이상 박사 취득 후 즉시 이상 석사 취득 후 경력3년 이상 학사 취득 후 경력6년 이상 |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|

※ 위 강사료 지급 기준안에도 불구하고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상 공직자 등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됨을 유의

○ 훈련과정 운영 유의사항

- 운영절차는 「사업주훈련 지원규정」, 「지산맞 운영규칙」을 준용
- 동일과정에 대한 회차 추가*는 지역 수요가 확인되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허용
- * 단, '21년도 지산맞 정기과정을 별도의 특화성 확보없이 그대로 회차 추가하여 “찾아가는 직업훈련”으로 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
- “찾아가는 직업훈련”은 2021년도 지역인자위·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 시 훈련실적 (연인원 및 평균훈련인원, 취업률, 수료율, 만족도 등)에 포함
- 훈련과정은 '21. 12. 31.까지 종료되어야 하며, 공동훈련센터 등 훈련기관에서는 실적 관련 데이터 제공 등에 적극적 협조

4 프로그램 개발

□ 신청주체

- “찾아가는 직업훈련” 사업에 참여하는 공동훈련센터
 - 파트너훈련기관 또는 신규 훈련기관(인증 비보유기관 포함)은 매칭된 공동훈련센터를 통해서만 신청 및 지원 가능함
 - 매칭된 공동훈련센터 파트너 훈련기관 또는 신규 훈련기관의 프로그램 개발비 집행관리 및 회계정산에 따른 책임이 있음

□ 지원내용

- 지원항목: 「지역·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운영규칙」 제51조제1항 및 [별표5]의 3. 프로그램개발비 등에 따른 항목

| 구분 | 내용 |
|-----------|---|
| 공통사항 | ① 컨소시엄 규정 제5조제1항제2호(사업주단체형)에 해당하는 공동훈련센터의 경우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 1. 협약기업의 산정 및 직종에 대한 인력수급, 교육훈련에 관한 조사·연구 비용 2. 국가직무능력표준(NCS) 등 해당 산업 및 직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직무 능력에 관한 표준가이드 등의 개발 비용 3. 해당 산업 및 직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직무능력 관련 인증, 자격검증 등에 관한 비용 4. 해당 산업의 인력수급, 인적자원개발 등을 위한 네트워크 운영 등에 관한 비용 |
| 지원 가능 항목 | ① 교육훈련 실시를 위한 직무분석 비용 ② 교육과정 개발 등의 비용 ③ 교재 및 교보재의 개발·보수·구매 등의 비용 ④ 컨소시엄 규정 별표 3에 따른 지원 이외의 교육훈련 실시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한 비용 |
| 지원 불인정 항목 | ① 전문 교육기관 등에서 기 개발된 교육과정을 구매하는 비용 ② 전문 교육기관 등에 수요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탁하는 비용 |

○ 세부항목별 지원기준

| 항목 | 지원대상(요건) | 지원기준 |
|-----------------|---|--|
| 전문가수당 (자문료) | ① 직무분석에 참여하는 내·외부전문가에 지급되는 수당 ② 커리큘럼 개발에 참여하는 내·외부전문가에 지급되는 수당 ③ 교재 개발에 참여하는 내·외부전문가에 지급되는 수당 ④ 교보재* 개발에 참여하는 내·외부전문가에 지급되는 수당 | ○ 1회 1인당 30만원이내(내부전문가일 경우 1/2이내로 지급 가능하며, 지역·산업 맞춤형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은 지급 불가) |
| 기술정보 수집비 | ① 직무분석·커리큘럼·교재·교보재* 개발 등에 필요한 전문 자료 구입 및 인쇄비용 | ○ 실비 인정 |
| 원고료 | ① 직무분석·커리큘럼·교재·교보재* 개발 등으로 내·외부 전문가가 집필하는 원고료 ② 다만, 전문 교육기관 등을 활용하여 개발하는 경우는 불인정 | ○ 등급별 원고료 지급안을 준용하되, 등급 외 인력은 C등급 기준 이내 금액 지급 ○ 다만, 내부전문가일 경우 1/2 이내로 지급가능하며, 지역·산업 맞춤형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은 지급 불가 |
| 출장여비 | ① 직무분석·커리큘럼·교재·교보재* 개발 등을 위해 사업 참여인력이 협약기업 등을 방문하기 위한 출장여비 ② 그 밖의 프로그램개발 관련 출장여비 | ○ 훈련기관 내부 규정 준용 |
| 인쇄비 | ① 직무분석·커리큘럼·교재·교보재* 개발 후 정산, 운영기관 보관용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인쇄비(과정별 10권 이내만 인정) | ○ 실비 인정 |
| 업무추진비 (식비 등) | ① 직무분석·커리큘럼·교재·교보재* 개발 등과 관련된 회의비 ② 기타 프로그램개발에 관련한 회의비 | ○ 1인 3만 원 한도 (다만,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5만원 한도) |

* 교보재: 교육 훈련을 위한 보조재료(시청각 매체 등)

- 등급별 원고료 지급안

| 등급 구분 | S등급 | A등급 | B등급 | C등급 |
|----------|--|--|--|--|
| 금액 | 40,000원 한도 | 30,000원 한도 | 20,000원 한도 | 15,000원 한도 |
| 자격 | 차관급이상 공무원 연구기관임원급기업체 사장급이상 부총장급(대학) 이상 박사 취득 후 경력15년 이상 학사 취득 후 경력25년 이상 | 4급 이상 공무원 책임연구원급연구위원이상 정교수급 이상 박사 취득 후 경력10년 이상 학사 취득 후 경력15년 이상 | 5급 이상 공무원 선임연구원급부연구위원이상 부교수급 이상 박사 취득 후 경력4년 이상 학사 취득 후 경력10년 이상 | 6급 이하 공무원 선임연구원급(원급) 미만 조교수급 이상 박사 취득 후 즉시 이상 학사 취득 후 경력10년 이상 |

- 프로그램 개발 유의사항

- ① 개발된 훈련 프로그램 내용은 지적재산권 분쟁이 없어야 하며, 공동 소유할 경우 합의서 등을 포함하여야 함
- ② 지원금으로 개발하거나 구매한 커리큘럼·교재 등에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개발자, 개발연도, 세부재원(지원금 또는 투자금), 인용 자료 출처 등 정보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
- ③ 기타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지원내용(집행 인정내용)은 「자산맞 운영 규칙」 및 매뉴얼, 회계정산 방침 등에 따름

□ 지원예산 결정 및 회계정산

○ 지원예산 결정 및 회계정산

- 공동훈련센터* 개소당 프로그램개발비 한도(2억원**)에서 신청 가능하며, 적정성 심사 및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원 확정

* 동일 공동훈련센터에서 복수의 프로그램 신청 가능

** 부산지역은 공동훈련센터별 1억원 한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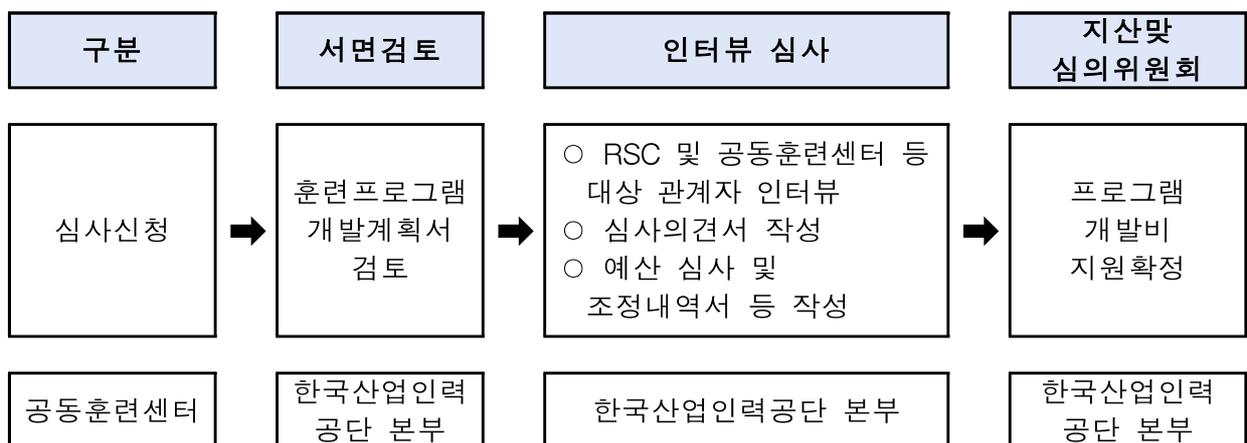
- '21년도 사업에 대해 공동훈련센터 대상으로 진행하는 정기 회계정산 시 '찾아가는 직업훈련' 지원금 정산 병행 실시

○ 훈련과정 운영

- 프로그램 개발비를 지원받은 훈련 프로그램은 연도 내 개발·승인 완료 및 훈련을 실시하여 '21. 12. 31.까지 종료되어야 함

□ 심사절차 및 방침

○ 심사절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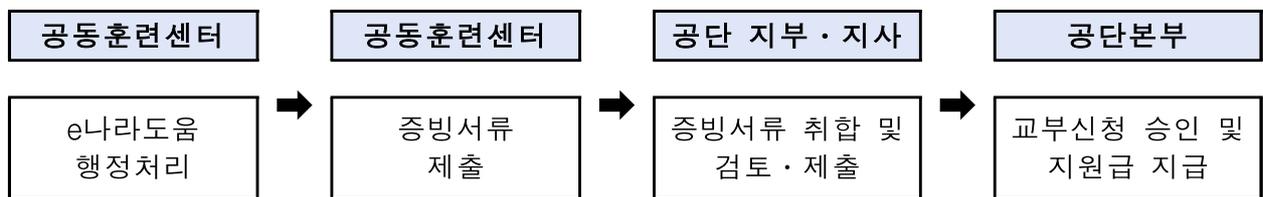
※ 프로그램 개발 계획서 서면 검토와 인터뷰 심사 동시 진행

○ 심사방침

- 4월부터 매월 '프로그램 개발비'를 신청·접수 후 정기심사를 통하여 총 예산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
- ※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계획(접수 일정 등 포함)은 별도 문서 시행 예정
- 훈련공급기관(공동훈련센터)이 신청한 '훈련프로그램 개발 계획의 적정성', '수요조사와 훈련프로그램 연계의 적정성' 및 '정부지원금 신청내역 등 예산 사용계획의 적정성'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
- 심사는 공단본부에서 주관하며, 계획서 서면 검토와 인터뷰를 통하여 실시
- 지원금 승인 여부는 「지역·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심의위원회」에서 최종 심의·의결

□ 지원금 지급

○ 지급 절차



○ 세부내용

- (공동훈련센터) '사업예산 변경' 및 '프로그램 개발비 교부' 신청(이상 e나라도움시스템) 후 지원금 신청서 등 증빙서류* 공단 지부·지사로 제출
- *인프라 지원금 신청서, 지원금 전용통장 사본,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협약서, 약정서, 사업자 등록증 등
- (공단 지부·지사) 지원금 신청서 등 증빙서류 검토 및 본부 제출
- (공단 본부) 지원금 교부 신청 승인 및 지원금 지급

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□ 신청·접수기간: 사업기한(~12. 31.) 매월 5일까지 제출(총 2회)

-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하며, 주말 및 공휴일은 접수받지 않음
- 신청을 희망하는 훈련과정에 대해 **훈련과정일람표 사전 제출 필수**
 - 제출기한: 전월 30일까지
 - 제출방법: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 담당자(shwook@korcham.net) 제출
 - 제출내용: 2021년 '찾아가는 직업훈련' 훈련과정일람표(00월)

□ 제출서류

- '찾아가는 직업훈련' 신청서 및 훈련계획서
 - '찾아가는 직업훈련' 신청서(원본) 및 제출 공문 1부
 - 훈련계획서 제본 10부 및 전자파일(USB) 제출
- 기타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및 심사위원의 요청 서류 등

□ 접수방법: 방문 또는 e-mail 접수

※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
□ 접수처: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

6 추진계획(안)

□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선정

| 심사 | 훈련계획서 접수 | 훈련계획 심사 | 부산인자위 본회의(총회) | 공단지부 과정인정 | 훈련실시 |
|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| 훈련기관→ 부산인자위 | 부산인자위 | 부산인자위 | 부산인자위→ 공단지부 | 훈련기관 |
| 1차 | 5. 4.(화) | 5. 12.(수) | 5. 20.(목) | 5. 21.(금) | 5. 21.(금)~ |
| 2차 | 8. 5.(목) | 8. 13.(금) | 8. 25.(수) | 8. 26.(목) | 8. 27.(금)~ |

※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□ 프로그램 개발 지원: 2021년 4월~6월 매월 1회(세부계획 별도 안내)

7 사업설명회

- 일시: 2021년 4월 13일(화) 11:00~12:30
- 장소: 아바니 센트럴 부산 브릿지1(남구 문현동)
- 참가대상: 2021년 '찾아가는 직업훈련' 참여 희망 훈련기관 관계자 등
- 주요내용 및 진행순서

| 시간 | 주요내용 | 비고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11:00~11:30 | ○ 2021년 찾아가는 직업훈련 사업설명회 | 부산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|
| 11:30~12:00 | ○ 2021년 찾아가는 직업훈련 훈련계획서 작성요령 안내 | |
| 12:00~12:30 | ○ 질의응답 등 | |

※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